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노래연습장업 등의 변경사항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동의서 기재 사항, 지자체의 직권말소 절차, 변경 신고 서식 등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11조)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사항의 신고 또는 등록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간소화(제12조)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가능 시간 외(오후 10시 ~ 오전 9시)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기 위해 보호자 출입동의서가 필요한 바,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인 청소년 인적사항, 출입사유와 출입허용일시,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중 ‘출입 사유’를 삭제함

다. 자치단체장의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제14조)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중 하나만 확인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0호)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에의 변경신고내용 기입란에 변경되는 상호, 영업자를 기입하는 부분이 없어 관련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2호 중 “출입 사유와 출입”을 “출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확인”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00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00 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③ (생략)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제2호 또는 제3호</u> 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 ----- ----- <u>. 제2호부터 제4호까지</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출입 사유와 출입 허용 일시</u>	2. <u>출입</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 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 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확인</u>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 ----- ----- ----- ----- -----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사항을 확인</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고 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